

“ 생산적인 의정, 연구 노력하는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

고산의정소식

<http://council.goesan.go.kr>



등잔봉 사계





괴산군의회 의장
지백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에 찬 임진년 한해 괴산군의회는 군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의회, 지역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 바른 사회,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진 알찬 의정 활동 성과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여러 모습을 담아 2012년 괴산의정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괴산군의회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괴산군의회에 바라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

우리 괴산군은 국내외적인 불확실한 환경속에서도 학생군사 학교 이전, 진미식품 준공, 산막이옛길 개장 및 2015년 세계 유기농엑스포 개최지 확정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룬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지역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는 활기를 찾아가고 희망이 샘솟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모아 괴산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이 총결집하여 이루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저희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이며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는 한편, 군민 여러분과 괴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적인 의정, 연구노력하는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CONTENTS

- 2011년 의정성과 | 04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 06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19
- 행정사무감사 | 26
- 특별위원회 활동 | 34
- 건의문 · 결의문 | 36
-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39



2011년 의정성과

▣ 내실 있는 회기 운영

- 회기운영 : 9회 85일(정례회 2/38, 임시회 7/47)
- 업무보고청취(2회), 군정질문(1회/39건), 행정사무감사(1회/41건), 결산승인(1회) 예산안 심사(4회)
- 안건처리 : 68건(의원발의 19, 고시군수 제출 49)
- 의원정례간담회 : 21회 88건

▣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11.4.19.~4.22., '11.10.14.~10.20.) : 88개소
- 환경보전특위('11.6.28.~7.1.) : 35개소

▣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운영

건 명	일 시	참여인원
귀농인 초청간담회	'11.07.01.	17명

▣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11.03.02.)
- 「증평소방서」 명칭변경 및 청천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건의문('11.06.27.)
-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11.09.20.)

▣ 의원연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의정실무 연찬회(태안 안면도, '11.6.1.~6.3.)
 - 울진원자력발전소 견학('11.4.12.~4.13.)
 - 친환경 녹색 사업장 견학(서천화력발전소, '11.11.4.)
- ※ 의원 해외연수 미실시(경제위기 극복 차원 연수비 전액 삭감)

▣ 회기운영 현황(2011.1.1. ~ 2011.12.31.)

- 개회횟수 : 연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 회의일수 : 연 85일(정례회 38일, 임시회 47일)

회기별	개회일	폐회일	회기일수
제193회 임시회	2011. 2.16.	2011. 2.22.	7일
제194회 임시회	2011. 3. 24.	2011. 3. 25.	2일
제195회 임시회	2011. 4. 19.	2011. 4. 25.	7일
제196회 임시회	2011. 5. 24.	2011. 5. 30.	7일
제197회 정례회	2011. 6. 27.	2011. 7. 4.	8일
제198회 임시회	2011. 7. 19.	2011. 7. 22.	4일
제199회 임시회	2011. 9. 20.	2011. 9. 29.	10일
제200회 임시회	2011. 10. 12.	2011. 10. 21.	10일
제201회 정례회	2011. 11. 21.	2011. 12. 20.	30일

▣ 안건처리 현황(제193회~제201회)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계류)	기타
	계	의원	군수	원안	수정	채택		
계	68	19	49	63	3	1	-	1
조례	소계	39	8	31	39	-	-	-
	제정	13	3	10	13	-	-	-
	개정	25	5	20	25	-	-	-
	폐지	1	-	1	1	-	-	-
기타	예산안	8	-	8	5	3	-	-
	승인안	2	-	2	2	-	-	-
	동의안	2	-	2	2	-	-	-
	건(결)의안	3	3	-	2	-	-	1
	기타	14	8	6	13	-	1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제193회 임시회(2011. 2. 16.~2. 22. / 7일간)

◎ 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194회 임시회(2011. 3. 24.~3. 25. / 2일간)

◎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일원의 우수한 환경조건을 활용하여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함양 및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며
- 성불산 생태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 포상금 지급 요령에 관한 인용조문 명확화
- 분법된 개정내용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제195회 임시회(2011. 4. 19.~4. 25. / 7일간)

◎ 괴산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인의 인영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 하려는 것임.

◎ 괴산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 괴산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및 효과적인 여행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여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안의 제출 기한 규정
⇒ 의안 심의는 집회일 7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함.



제196회 임시회(2011. 5. 24.~5. 30. / 7일간)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 계	284,738,393	261,310	261,310	284,738,393
일반회계	257,417,541	261,310	261,310	257,417,541
특별회계	27,320,852	-	-	27,320,852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 치 금	기타지출
합 계	5,303,741	254,137	5,043,226	6,378
지방세발전기금	2,327	609	1,718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5,656	10,700	394,956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15,710	4,080	311,630	0
사회복지기금	3,438,058	56,200	3,381,858	0
식품진흥기금	138,897	0	137,976	921
재난관리기금	655,641	176,000	474,184	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47,452	6,548	340,904	5,457

◎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군유지 확대 및 집단화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소 재 지	칠성 사은 산14외 24필	괴산 동부 산2외 95필	증 71필
면 적	2,496,868	3,966,361	증 1,469,493
추정가액	2,396,269	6,112,565	증 3,716,296

- 청사사무실 증축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分	당 초	변 경	비 고
층 수	지상3층	지상3층	
연면적	1,000	1,287.05	증 287.05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사업비	1,950,000	2,892,494	증 942,494

- 충혼탑 재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分	소재지	지목	연면적	소유자	용도	매입추정가	비고
토 지	괴산 동부 436-1	임야	3,706	수진마을회	충혼탑부지	60,000	

-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分	소재지	지목	연면적	소유자	용도	매입추정가	비고
건 물	괴산 동부 181	대지	1동/ 1,500	신축	사회복지시설	2,800,000	

-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分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용도	매입추정가	비고
계			2,912			500,000	
소 계			2,912			210,000	
토 지	괴산 대덕 126-6	도로	2,088	국토해양부	적사장부지	167,000	
토 지	괴산 대덕 124-2	도로	524	국토해양부	적사장부지	43,000	
소 계			300	국토해양부	사회복지시설	290,000	
건 물	괴산 대덕 126-6	도로	300	신축	수로원 대기실등	290,000	

◎ 과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과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용역 심의 제외범위 확대
 - ⇒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 및 관리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투자 계획이 수립된 사업
 - ⇒ 투융자심사 및 기본설계 심의를 거친 사업

◎ 과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학생중앙군사학교 영외숙소가 과산읍 서부리 일부와 대사리 일부에 한단지로 건축 되고, 소수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필의 토지가 2개읍면(과산읍, 소수면)에 걸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구제역 피해농가 과산군 군세 감면안

- 2010년 12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된 가축피해농가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산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

◎ 과산고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과산고추축제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과산청결고추를 비롯한 청정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민간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축제발전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함.

제197회 정례회(2011. 6. 27.~7. 4. / 8일간)

◎ 과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 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과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감면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확인범위 확대
⇒ 「주민등록법」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하고
-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 연장 : "30일"을 "60일"로 하고
- 지방세 전자승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 세액공제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승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 군세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위법 조항 반영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을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결산액 : 356,682백만원
 - 세출결산액 : 273,323백만원
 - 세계잉여금 : 83,359백만원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비비 지출액 : 392,098,860원



제198회 임시회(2011. 7. 19.~7. 22 / 4일간)

◎ 과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수입증지를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수입금 정산 절차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 처리방법 추가

◎ 과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과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존속기한 명시 : 시행일로부터 5년
- 과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 및 추천·선발 변경

◎ 괴산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괴산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 관리 조례에 존속기한 명시
⇒ 시행일로부터 5년
- 괴산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 관리 조례에 명시된 직책의 변경



제199회 임시회(2011. 9. 20.~9. 29. / 10일간)

◎ 괴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내 거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코져 함.

◎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인의 인영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임.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매년 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연장.
- 행정사무 감사 ·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각각 15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변경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1일로 변경

◎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괴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소유자	용도	비고
계	건물 2동/토지15필		14,397	9,250,000		
건 물	괴산 서부 653	경량철골조	162	48,600	최진영	매입후 멸실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2,159	8,350,000	괴산군	신축
토 지	괴산 서부 654외 14필	전,답, 창고용지 등	12,076	851,400	이문호씨 등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괴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 계	301,591,433	-	-	301,591,433
일반회계	273,906,148			273,906,148
특별회계	27,685,285			27,685,285

◎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문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백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군의 법률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 조례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근거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에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괴산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장으로 일원화
-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 ⇒ 당초 :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 ⇒ 변경 :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分	현 행			개 정 안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80% 이상	17% 이상	3% 이내	80% 이상	16% 이내	4% 이내

-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기능직공무원

구 分	현 행					개 정 안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3% 이내	9% 이내	16% 이내	32% 이내	40% 이상	6% 이내	14% 이내	20% 이내	34% 이내	26% 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 分	현 행					개 정 안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93% 이내	7% 이상	-	-	-	95% 이내	5% 이상	-	-

제200회 임시회(2011. 10. 12~10. 21. / 10일간)

◎ 괴산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명 변경

⇒ 변경전 : 괴산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후 :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관리 조항에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 추가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괴산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 반환, 7일에서 1일전은 50퍼센트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

◎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괴산군 관내 전통시장의 시설물 운영관리와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그리고 상인조직 등 전통시장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01회 임시회(2011. 10. 12~10. 21./ 10일간)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청천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 청천면 선평리 125번지외 2필지 2,446m²
- 권역활성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 사리면 중흥리 1-1번지(건물 1동 919.25m², 토지 1필지 9,680m²)
- 문광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 문광면 양곡리 34-2번지외 17필지(건물 6동 1,645.6m², 토지 18필지 35,118m²)
- 군유지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 ⇒ 괴산읍 동부리 산1-1번지외 37필지 1,463,049m²
-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 ⇒ 장연면 오가리 509번지외 6필지 4,290m²
- 청천배수지 리모델링계획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 ⇒ 청천면 선평리 132번지외 3필지 5,969m²

◎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항목 정비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개선
- 주차요금 징수지역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포괄한 개념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
-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항목 정비

◎ 괴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조례명을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위주의 내용을 발생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부개정하고자 함

◎ 청천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군유재산 (예정)부지 내에 타 지자체(충북도)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므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고자 함.
- 청천119안전센터 부지 내 영구시설물(소방청사 등) 축조계획
 - 위치 : 청천면 선평리 125번지 일원 3필지
 - 건축연면적 : 703.50m²(지상 2층)
 - 용도 : 소방청사, 소방차고 및 부대시설물

◎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국토의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환경친화 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속리산국립공원 일부변경(환경부고시 제 2010-112호)에 따라 해제 및 편입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 위치 : 속리산 국립공원 일원
 - 면적 : 4.358km²(약 1,318천평)
 - ⇒ 관리지역 세분 : 2.458km²
 - ⇒ 용도지역 변경 : 1.900km² (국립공원 편입지역 : 1.881km², 보전산지 해제지역 : 0.019km²)

◎ 괴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0)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기능직(사무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 정원 조정 내역

현 행		개 정 안
구 分	정 원	정 원
계	600	604(4)
정무직	1	1
일반직	452	467(15)
별정직	18	18
연구직	6	6
지도직	28	28
기능직	95	84(\triangle 11)

⇒ 기능직(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 기능직(\triangle 11명) ⇒ 일반직(11명)
- 기능7급(\triangle 1명) ⇒ 일반직7급(1명)
- 기능8급(\triangle 6명) ⇒ 일반직8급(6명)
- 기능9급 · 10급(\triangle 4명) ⇒ 일반직9급(4명)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 4명

◎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관급자재의 범위 완화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변경

◎ 괴산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공중위생법 제31조 삭제(1993.12.27.) 및 공중위생법 폐지(1999.2.8.)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함.

◎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分	'12년 당초 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규모	256,035,233	1,584,847	1,584,847	256,035,233
일반회계	231,873,526	1,584,847	1,584,847	231,873,526
특별회계	24,161,707	-	-	24,161,707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합계	5,662,662	315,386	3,268	5,344,00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4,736	9,700	-	425,036
지방세발전기금	4,172	1,200	-	2,97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22,650	5,080	-	317,570
사회복지기금	3,702,014	76,726	-	3,625,288
재난관리기금	709,017	220,000	-	489,01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50,999	2,680	3,268	345,051
식품진흥기금	139,074	-	-	139,074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삭감	증(예비비)	
총규모	305,299,449	-	-	305,299,449
일반회계	277,163,827	-	-	277,163,827
특별회계	28,135,622	-	-	28,135,622

◎ 괴산군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 괴산건축자재 일반사업 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괴산군이 추진중인 중점 사업으로 국비 포함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 사업임.
- 괴산군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부지 보상 및 사업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과 건축자재산업단지조성공사 사업참여 협의중 사업참여 조건인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등 매입확약에 대해 검토하게 됨.
- 군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07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2년1분기중 사업부지 매수 및 보상 착수하고, 12년2분기부터 공사 착공하여 13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음.
- 이에 괴산군이 토지 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800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과 대출기관(대출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포함. 이하 동일함)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바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괴산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괴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1킬로미터 이내로 변경함.

◎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있어 위·변조방지시스템 도입내용 및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 산정 및 대행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청소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질문

우리군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답변**

홍관표
의원

주요질문 사례 게재

-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첫째, 예찰과 소독의 강화 → 우리군의 예찰요원 28명을 총동원하여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둘째, 소독시설 지원 확대 ⇒ 소독설비의 의무설치 규정으로 2004년부터 농장의 소독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장차량 방역시설 145개소와 축사내 방역소독시설 40개소를 지원하여 농장 단위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독시설 지원을 통하여 차단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셋째,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 지금까지의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발생국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로 발표되고 있고, 각종 지원이나 규제 등을 통하여 기축전염병을 예방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은 농가 단위 별 차단방역이라 할 수 있음.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회의나 교육시 방역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방역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련법에 따른 소독 및 시설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 넷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 강화 ⇒ 우제류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접종에 따른 중체감소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정부에서는 출하되는 가축 및 농가에서 혈액을 채혈, 수시로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하여 항체가 8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가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또한, 금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A형 등 다른 종류의 구제역 유입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이에따라 10월부터는 3가 백신, 즉, O형, A형, 아시아 1형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농가에 공급하여 접종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 백신접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다섯째,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 ⇒ 강화된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신속한 초동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군민 보건의료 요구 파악과 군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대책,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현황과
금년 하반기 충북대병원 의학센터와 공중보건의와 협진 실시 계획은?

**답변**

신동운
의원



- 우리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0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을 수립하였음.
- 우리군은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군민 삶 수준 향상 등으로 급성질환 치료 중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합병증 관리사업과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대책으로 보건기관 현황을 보면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가 있으며, 시설노후화 정도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신축 완료되어 시설, 장비가 보강되었으며, 현재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 계획에 있음.
-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일반의 2명, 치과의 1명, 한방의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일반의 12명, 치과의 3명, 한방의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 충북대병원 의학센터와 공중보건의와의 협진 실시계획은『농어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이용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중 의료부분으로 충북대학교 의학정보센터와 보건소, 11개 마을회관에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충북대학병원 각 분야별 전문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40분, 질의 응답 20분 실시 후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와 협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을 하고, 중증 환자는 충북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보화진흥원』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음.

질문

임도 기본현황 및 재해발생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임도와 관리대책, 또한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 및 산사태 위험지구내 주민 대책은?

**답변**

김병준
의원



-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29개 노선 94.1km의 임도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괴산읍 3개소 7.7km, 장연면 3개소 3.3km, 칠성면 1개소 1.2km, 문광면 4개소 14.6km, 청천면 6개소 26.3km, 청안면 5개소 14.9km, 사리면 2개소 10.1km, 소수면 2개소 4.9km, 불정면 3개소 11.1km이며, 금년도에는 칠성면 송동리에서 문광면 옥성리까지 3.0km 구간과 문광면 광덕리 1.7km 구간의 임도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 중 재해발생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임도는 있으나, 금번 여름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시 임도에서도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금년 7월 11일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정면 앵천리 임도 성토부 약 0.3ha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제2회 추경에 복구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할 예정임. 향후 모든 임도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임.
- 산사태 위험지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임. 다행히 현재 우리 군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산림은 없음. 그러나, 금년과 같이 집중호우로 연속된 강우가 계속되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일례로 지난 7월 폭우로 인하여 불정면 신흥리 산33-1번지 계곡부에 0.1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문광면 광덕리 산89번지 뒷산에도 토사가 유실되어 비닐피복 등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고, 산사태 발생 부분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복구를 실시토록 할 예정임.
- 산림청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지역 899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이 중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6개 지역이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질문

농업인력 수급대책 및 선진농업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답변**

○ 2010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괴산군 농업경영주 6,834명 중 65세 이상은 2,826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율은 46%에 달하고 있어,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및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음. 농업인력의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으로 귀농인 유치에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22명에게 12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2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였고, 16명의 귀농인에게 빙집수리를 통한 정착을 도모하였으며, 6명의 귀농 희망자에게 농업인턴 실습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 귀농정착을 도모하였으며, 그결과 2011년 상반기 32가구 72명의 귀농자가 정착하였음.

○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기당 경지면적의 확대에 따라 농업정책을 품목별 정예농업인 육성,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농의 약점을 스스로의 꿈과 비전하에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농가 경쟁력을 통한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강소농 육성, 농업계학교 출신의 차세대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된 농업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농촌경제연구원 등 10여개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효과 재분석' 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농업부분은 12조2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은 축산업이 연평균 4천866억원, 과수 2천411억원, 채소특작 655억원 등으로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한우, 고추, 사과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임금, 유가, 사료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증가와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음.

○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농축산자원화센터 건립,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유기질퇴비공장 증설, 톱밥 생산시설 및 미생물배양센터 완공을 통한 경종, 축산, 임업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 체계구축을 통한 경쟁우위 농축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고 둘째, 절임배추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에게 신속 정확한 직거래망의 구축을 위해 APC 등 유통센터를 집중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구하며 셋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역전략식품 육성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 구축과 향토산업 지원 등으로 주요 농산업을 생산·가공·관광 등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농업정책을 수행하겠으며 넷째,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전원마을, 농어촌테마공원 등의 사업추진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할 계획이고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기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활력있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음.

질문

지역주민에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향은?

**답변**

박연섭

의원

○ 향후 실천방향에 대하여 3대 전략목표별로 답변을 드리겠음.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실적을 금년내 1,000기구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청사 조명을 친환경 LED로 540개 교체하고 55호의 태양광주택 보급과 금년중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를 준공하여 연차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 도시가로등을 46개 교체하고 차량 5부제 실시와 의회를 포함한 군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향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음.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군 역시 이상고온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고추축제시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이에 비가림시설 확대 등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 다음으로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전기시설 개·보수 사업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괴산군도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내 태양광관련 업체 및 기타 전지관련 업체를 유치할 계획임.

○ 녹색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는 세재 자전거길 사업을 이달 중 준공하고 11월에 자전거 대행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말 군민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에 우리군내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홍보 자료 배부 및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음. 또한, 동진천과 상황천의 하천환경 조성과 함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성불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질문

당초 계획되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과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 이유는?

**답변**

장효배
의원



- 괴산 개발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지정 승인되었으며 2007년 4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간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54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 지역특화분야에 벽초문학마을, 김홍도마을, 청안전통선비마을, 전통식품체험단지, 한자전통체험단지, Bio씨감자 연구단지, Bio씨감자 생산단지 등 7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관광휴양분야에 괴강관광지, 화암에듀파크, Bell-Mt(벨-마운틴) 실버파크 등 3개 단위사업이 있고, 기반시설분야에 Bio씨감자생산단지 진입도로, 여가문화체험지구 연결도로 확장, 김홍도마을내 도로 개설, 화암에듀파크 진입교량 가설, 전통식품체험단지 진입도로 등 5개 단위사업이 있음.
- 2009년 7월 괴산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부진사업에 대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행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기간 만료일인 2010년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투자유치가 지난 한 벨-마운틴(Mt) 실버파크, 청안전통선비마을과 농림사업외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불가한 전통식품체험단지는 추진 가능성이 회복하여 정비하게 되었으며 2010. 12. 1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괴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
- 사업기간이 당초 2005. 12. 30일부터 2010. 12. 30일까지였으나 2014. 12. 31일까지로 4년 연장되었으며 개발계획은 당초 15개 단위사업에서 16개 단위사업으로 변경되었음. 벨-마운틴(Mt) 실버파크, 청안전통선비마을, 전통식품체험단지 등 3개 단위사업이 폐지되는 대신에 발효식품농공단지, 성불산 치유 생태공원, 첨단산업단지 등 3개 단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음.
-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기반시설사업 중 화암에듀파크 진입교량 가설, 전통식품체험단지 진입도로 확장 등 2개 단위사업이 폐지되는 대신에 발효농공단지 연결도로, 성불산 치유 생태공원 진입도로,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등 3개 단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국비 548억원은 전액 변동 없이 지원될 예정임.

질문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과
지원내용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답변**

윤남진
의원

-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괴산읍 읍내로6길 19-8 여성회관에 있으며 한석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방문팀장, 사업팀장, 통번역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말 현재 중국(조선족) 50가정, 베트남 49가정, 필리핀 46가정, 일본 20가정, 몽골·캄보디아·태국·우즈·k베이스탄·네팔 등 16가정으로 총 181가구가 등록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 82백만원, 사업비 208백만원으로 가정방문교육 및 한글교육, 통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한국어지도사 7명, 부모교육지도사 6명, 자녀생활지도사 4명이 68가정을 찾아가 맞춤형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통번역사(1명)에 이어 내년부터 필리핀 통번역까지 확대할 예정임.
-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초·중·고급 과정의 한글교육과 월1회 요리교육과 나라별 자조모임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언어발달과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단계별 맞춤 언어발달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의 학습부진 및 의사소통 장애를 예방하고 학교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는 자녀출산 및 경제적 여건 등의 사정으로 결혼 후 상당기간이 지났어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5가구 19명의 가족에게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위한 제3회 세계인의 날 축제지원(7백만원),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가정에 대하여 해마다 합동결혼식(13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 6월부터 괴산읍 서부리 276-1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1월 완공되면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남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의 만남과 나눔의 문화 형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생활 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행정사무

제20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1.11. 22.~ 12. 30.(9일간) 실·과·사업소
및 소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유사증복된위원회통합운영

- 유명무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등 객관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요망됨.

■ 주민참여예산제시행에따른주민참여 저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철저한 홍보 및 계도로 참여율을 높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의견 수렴이 쉬운 설문방식, 인터넷 설문 외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새로운 방안강구가 요망됨.

■ 도와교류 공무원 및 장기교육 이수자 배치 관련

- 도와 교류 공무원을 도 근무부서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추진 시 협조 체제 증진과 인맥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장기교육 이수자가 업무배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 등 인사에 반영 요망.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배치 관련

-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다양화하여 업무추진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 요망.

● 유명무실한자매결연지역 · 단체정비

- 자매결연 지역 및 단체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특히 집안시와 같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상호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 2007년 7월 3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한국방송 연기자협회 등과 같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지역이나 단체는 정리 요망.

●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난방비등지원 현실화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난방비, 강사료 지원의 현실화와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권역별(2~3개 읍면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유재산관리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 부과 예정인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가 요망됨.

●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립 후 사업추진부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 완료와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 복지급이수급자관리 및 부당수령액 환수마흡

- 관련법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신고 의무가 있으나, 군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계도를 통하여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부당 수령자가 저소득층 및 노령으로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환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전산오류로 인한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활용 미흡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활용으로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이동순회노인복지서비스프로그램 확대운영

- 청천, 청안, 사리, 연풍면 외에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감물, 장연, 불정면까지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헌지체험마을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증복투자

-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설계도면 작성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바닥으로부터의 습기로 인한 나무기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이 요망됨.

■ 조령민속공예촌 사용료 징수 미흡

- 조령민속공예촌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 현재 미착공 및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괴산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정산 및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명덕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이용시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괴산군민기마술 활용 미흡

- 주민성금 등으로 제작한 괴산군민 기마술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망됨.

● 도로명주소안내도로명판 추가설치

- 마을의 골목길 및 외딴집의 진입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건물번호표시)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개별공시지가 산정 표준지 확대

- 합당한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 등 표준지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유재산(행정재산) 관리 미흡

- 괴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등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건진료소근무지 지역 내의 거주의무폐지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

- 근무지 지역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새재자전거길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 폭(幅)이 협소한 구간(1km 정도)에 대한 확장방안과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신규 시설물(예:안전펜스)이 기존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됨. 토종닭나무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 향후 사업 확대를 대비하여 토종닭나무 명품화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대책에 대하여

- FTA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부분 피해 증가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하여 군(郡) 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농업기반시설 정비,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의 확대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 특별회계 사업추진 미흡

-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현장여건, 공사기간,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요망 함.

● 절임배추작목반 운영 철저

- 농가소득 극대화 및 보조금 지원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읍·면별 절임배추 작목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 절임배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소규모 작목반 형태를 넘어서서 일종의 절임배추가공공장과 같은 형태로 대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 항암배추사업에 대하여

- 항암배추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보급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 품질인증서 등 항암절임배추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과대료 징수 미흡

- 불법어업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산양삼 생산이력제 홍보 미흡

- 산양삼 식재자 이외에 산림관련 종사자와 주민들에게도 생산이력제를 적극 홍보해 주기를 요망함.

● 군유임야사업 확대 필요

- 감정평가사 선정시 토지소유주에게도 1인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군유임야 확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11년 본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 자부담 확보 및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발주 사유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주기 바람.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방법 등을 몰라서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를 요망함.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 가구당 200만원인 보조금 수준을 준비 지원을 더 늘려서라도 신청자의 자부담을 줄여주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민자유치 포장재 생산시설 추진에 대하여

- 관내 제품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품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야 할 것임.

● 군민화관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관리 미흡에 대해

-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과 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훼손된 경계 펜스 복구 그리고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관리방안 확보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됨.

● 노상적 차물 단속 철저

- 도로변과 인도상에 난립한 적치물 및 고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간판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선된 도시미관 저해 요인 해소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가 요망됨.

● 도심지구내 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하여

- 도심지역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보대책 마련과 추진이 요망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이용 소비자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도심지구내 공한지나 노후 주택 등을 구입·활용하는 등의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사용중인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 또는 방치된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요망함.

● 각종 시범사업에 대하여

- 향후 추진할 각종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영농기술 보급추진, 시범사업 완료 후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후 보급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망함.

● 농업연구소 일용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 원활한 씨감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씨감자 생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일용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강소농 육성지도 실적마흡

- 강소농 선정 뿐만 아니라 선정된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실천 가능한 현지 방문의 날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를 요망.
- 많은 예산이 소요될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람.

● 상수도사용요금 고액 및 장기 체납자 정리 미흡

- 장기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절기 일시적인 하수량 증가 대비 등 하수처리시설 증설 인기를 위한 적극적 추진이 요망됨.

●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 철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요망됨.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2011. 4. 20~4. 21, 2011. 10. 17~10. 19(현지조사활동)

▶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장(이월사업 포함)
- 방법 : 현지확인점검

▶ 주요점검사항

- 미착공 사업장 : 미착공사유 및 준비상황 분석(측량, 설계, 계약 등)
- 공사중인 사업장
 - 공사 진척상황,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 사업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 완료된 사업장
 -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사업장 주변 정리실태

▶ 조사결과

-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인접 지역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 실시시기에 따라 실·과·소간 사전협의나 의견조율의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 대비해 향후 우수관 등의 시설물 설치시에는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하여 집중호우시 시멘트 맨홀 등의 배수관이 작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에 대한 공사설계시 사업장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를 통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수목정 관광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훼손된 시설물 방치와 주변 제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괴산군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지점검시 해당사업 부서장의 동행 설명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괴산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 장연복지회관주변정비 |

⇒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을 동일 장소에 결집한 행정타운을 설치

| 불정면 상석정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 토지주가 무상사용승락(60m)과 공사 실시를 건의함으로써 2011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미무리한 사례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귀감이 됨.

| 사리면 증흥리 칠성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

⇒ 주민 숙원사업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통행자와 자전거 및 농기계의 낙상과 추락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2011. 6. 29.~6. 30.(현지조사활동)

▣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 · 대기배출 사업장, 오수 ·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배출농가
- 방법 : 현지확인점검

▣ 점검사업장 및 업소

계	기업체	세차장	양축시설	오·폐수처리업소	기타
35	15	-	14	1	5

▣ 조사결과

-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주변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우수 유입 방지 노력이 부족하였음.
- 퇴비사 관리의 소홀로 축산폐수가 주변 하천으로 유입 우려가 있음.
- 퇴비사, 축사 등에 비가림시설 등의 설치 및 시설물 목적에 적합한 운영이 요구됨.

▣ 개선의견

-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관련부서는 정기적인 환경보호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의식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생균제와 톱밥의 적정량 사용으로 분뇨악취의 최소화와 축산폐수의 하천유입 방지를 통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농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인체에 유해한 석면의 함유로 슬레이트를 해체할 때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비용 과다소요 및 처리 지원 업무의 이원화와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방치 및 무단투기, 은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리방법의 개선이 요망됨.

| 과산을 정용리 서규석 축산농가 |

⇒ 평소 환경보전 및 친환경 축산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생균제와 톱밥을 적정량만큼 사용함으로써 다른 축사에 비해 악취가 나지 않고 축사 시설이나 환경정비 상태도 다른 축산농가의 모범이 됨.

| 장연면 오가리 장연고속도로 휴게소(하) |

⇒ 활성슬라지 접촉산화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양호하고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와 자연석의 보관이 적정하며 기타 식당 위생점검 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등 청결상태가 매우 양호함.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우리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베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언론보도와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꿈꾸기도 전에 몰락하고 있다.

주로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대도시로 송금되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비자인 중소상인들의 몰락까지 이어져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적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바늘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는 것이고 최소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장사에서 나름대로 지켜온 사회적 윤리인 「상도(商道)」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앞서 언급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현실화 되어,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베풀목인 영세 소상공인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강력히 대응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011년 3월 2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증평소방서』 명칭변경 및 청천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건의문

4만 괴산군민은 오랜 기간동안 타 시군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괴산지역 소방기반의 확충과 장기적으로는 『괴산소방서』 신설을 열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괴산군민의 일치된 소망과는 달리 타 시군은 안전센터를 증설하고 소방서가 신설되는데 비해 1994년 이후 괴산의 소방기반은 17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4만 군민이 거주하고, 관할 면적은 도내 군지역 중에서 2번째로 넓은 괴산군에는 충북 도내 12개 시군 중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1곳에 불과하고, 군내 소방서도 없으며, 관할 소방서 명칭마저 『증평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민들은 화재와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괴산군에도 제대로 된 소방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괴산군민들의 일치된 요구와 의지가 뚜렷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4만 괴산군민은 더 이상 괴산군에 대한 소방분야의 흠대와 소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증평산림조합, 괴산증평축협 등 괴산증평지역의 공공기관이 기관명칭에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을 병기하여 지역주민의 공감속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직속기관인 『증평소방서』가 유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증평소방서』 관할 지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괴산의 지명을 소방서 명칭에 병기하여 함께 사용하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괴산·증평지역간 상생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일인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괴산군과 비슷한 조건의 타 시군에는 몇 개씩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면서 유독 괴산군만 그 넓은 면적을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단 1개의 안전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4만 괴산군민의 염원을 대표하여
『증평소방서』 명칭변경과 청천119안전센터 조기 건립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7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일 ~ 30일 평균판매가격 대비 3% 이상 인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대해 수확기 대책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은 물가안정을 담보로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쌀값을 잡는다고 연일 치솟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물가상승은 현 정부가 서민경제는 안중에 없고 부자경제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에서 발생된 정부정책의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쌀값을 낮춰 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발상은 타당성이 극히 결여된 고질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RPC 길들이기며,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예측된 정책실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올 양곡연도말에는 2010년산 쌀 제고가 한 톤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유례없이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를 감안할 때 올 수확기에도 풍년을 전망하기 힘든데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식량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는 현 정부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농업을 경시하는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경우 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농작물 피해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농심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며, 농자재값 폭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악화돼 있는 농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수년간 인건비조차도 견지지 못하고 있는 농업 회생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을 말살하려는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농업생산을 위해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업생산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3. 농협중앙회와 (사)RPC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당한 압력을 강력히 거부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한 공공비축미 확대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0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제19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11.02.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11.05.27.)



○ 의원정례간담회('11.09.16.)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11.03.02.)

사진으로 보는



증평소방서 명칭변경과 청천119안전센터 조기건립 촉구 결의('11.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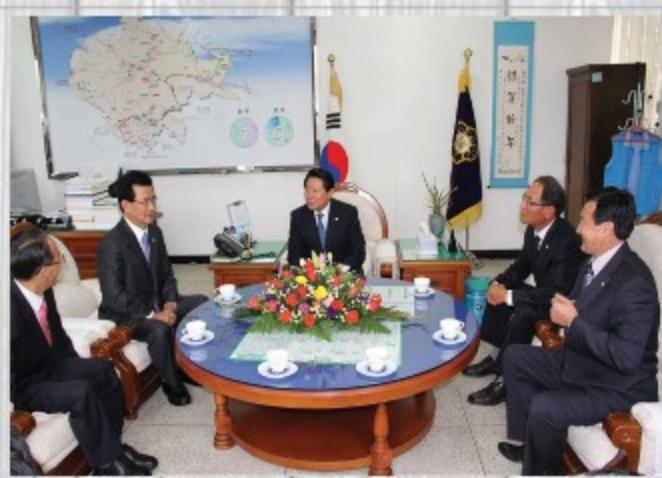
물가안정 협조 RPC 베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
철회 촉구 결의('11.08.16.)



귀농인 초청간담회('11.07.01.)



전북 순창군의회 방문('11.10.11.)



이시종 도시자 방문('11.10.14.)



2011년 정책협의회('11.04.22.)



○ 충부4군 의회 합동 연찬회('11.05.18.)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11.09.19.)



○ 울진원자력발전소 견학('11.04.12.)



○ 의정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수('11.06.01.)



○ 괴산군 기관·단체 친선 족구대회('11.10.27.)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지백만 의장



| 칠성초등학교 급식 행사('11.03.07.)



| 201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연회(' 11.6.21.)



| 농기희망봉사단 봉사활동('11.10.21.)

● 홍관표 부의장



| 씨감자 연구단지 방문('11.02.22.)



| 산불없는 마을 현판식('11.03.08.)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1.04.2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신동운 의원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11.06.29.)



| 제197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5분자유발언('11.07.04.)



|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11.11.10.)

김병준 의원



| 구제역 방역 현장 근무('11.01.21.)



|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촉구 결의 대회('11.02.15.)



| 제3회 미션나무 전시회('11.03.26.)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이광희 의원



| 세평보건진료소 준공식('11.09.30.)



| 감물면민 한마음 축제('11.10.25.)



| 행정사무감사('11.12.28.)

• 박연섭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11.01.25.)



| 충북시군의회합동연찬회 장기자랑('11.06.08.)



| 청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11.10.2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장호배 의원



| 구제역 매몰지 점검('11.04.20.)



| 제20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5분자유발언('11.12.13.)



| 행정사무감사('11.12.23.)

윤남진 의원



|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11.07.07.)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1.10.17.)



| 희망 2012 나눔캠페인 성금모금('11.12.08.)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GOESAN COUNTY COUNCIL

367-80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2(서부리 125)

[의장실] 전화 (043) 833-2280, 830-3570

[부의장실] 전화 (043) 833-9988, 830-3571

[의원실] 전화 (043) 833-9988, 830-3591~6

[의회사무과] 전화 (043) 833-2281, 830-3580, 3581~9

[사무실] 팩스 (043) 833-9986

<http://council.goesan.go.kr>

<http://council.goesan.go.kr>